

『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는 2006년 7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

□ 다만,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령으로 「지역문화진흥

법」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명기된 「문화기본법」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외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을 추가함으로써 서울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